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 근거 마련 〉

■ 박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50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준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14.

3. 회부연월일 : 2026.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일부 경찰서에서 법적 근거의 부재를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를 거부하거나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제19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과 그 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치원장이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경찰관서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 “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u>제19조의8</u> 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 ----- ----- ----- ----- ----- ----- <u>제19조의9</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u>신설</u> >	<u>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u> 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

	<u>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u> <u>②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u> <u>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④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u> <u>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9조의4</u>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생 략))	<u>제19조의5</u>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현행 제19조의4와 같음))
<u>제19조의5</u>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	<u>제19조의6</u>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생략)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생략)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생략)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생략)	운영) (현행 제19조의5와 같음) 제19조의7(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현행 제19조의6과 같음)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설치) (현행 제19조의7과 같음) 제19조의9(유치원회계의 운영) (현행 제19조의8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에서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위원회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²⁾.

-
- 1)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 2)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하지만 유치원 원장이 위원회 구성을 위해 위원 후보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등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일부 경찰서에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위원회 구성이 어렵고 위원의 정당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원 후보자 등의 동의를 받아서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원활히 하려는 개정 취지로 보임.

□ 개정안은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신설 조항³⁾과 유사하게 조문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초·중등교육법」도 「유아교육법」과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도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되

-
- 3)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제31조의3 조항은 2025. 4. 1. 신설되었음)

었음.

따라서 「유아교육법」도 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및 위원의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요청시 대상자는 ‘선출되기로 결정된 후보자’에 한정된다”는 경찰청의 공문⁴⁾ 내용에 따라,

실무적으로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하지 못하고, 위원 당선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만을 요청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므로⁵⁾, 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개정내용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7

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조회 관련 통보 및 협조 요청’ 경찰청 범죄분석과-15709(2024. 7. 3.)

5) 예를 들어 당선이 된 후 범죄경력 조회를 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시 선출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음